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604 |
|----------|------|

발의연월일 : 2024. 11. 27.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고, 전동보장구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험회사 선정·보험 가입 등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보험금 청구 및 보험증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중 동력 구동 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그 사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

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

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법률)」(2024.2.13. 일부개정, 2024.8.14. 시행)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2017.9.19. 일부개정, 2018.12.30. 시행)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3.12.22. 일부개정, 2024.1.1. 시행)

[별표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3 12 23 동력 구동 휠체어(Powered wheelchairs)

가동성이 제한된 사람에게 좌석지지 시스템이 있는 바퀴 가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 또는 연소 동력원으로부터의 모터 동력원을 공급받아 전동으로 추진되는 장치

기립형 전동 휠체어(사용자를 상승시키고 기립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휠체어), 등받이 각도 조절식 전동 휠체어, 거상 또는 좌석의 공간 경사형 휠체어, 스노 휠체어, 해변가용 휠체어, 수영장용 휠체어, 휠체어 차대가 포함됨

3 12 23 03 전동 스쿠터 (수동 조향식 전동 휠체어,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with manual direct steering)

전동 보조 없이 구동바퀴 축의 방향을 기계식(핸들형, 수동)으로 조절하는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의료용스쿠터 등이 포함됨

3 12 23 06 전동 휠체어 (전동 조향식 전동 휠체어,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with electronic steering)

사용자가 전기 조절장치(조이스틱형, 전동)를 사용하여 조절하는 수동 및 전동 조향식 전동휠체어, 엔진 구동 휠체어,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등이 포함됨

3 12 23 09 엔진구동 휠체어 (Combustion powered wheelchairs)

연소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휠체어

한 손 레버식 휠체어, 하나의 핸드림 구동 휠체어가 포함됨

3 12 23 12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Assistant-controlled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전기 조절장치로 보조인이 구동하는 전동 휠체어

3 12 23 15 계단 오르기 전동 휠체어 (Stair-climbing powered wheelchairs)

사용자가 탑승하고 작동하여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전동 휠체어

3 12 23 18 자가균형 휠체어 (Self-balancing wheelchairs)

보조바퀴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탑승자의 신체 움직임이나 조이스틱을 통해 조정되는 이륜구동 휠체어